

한국유전자교정학회 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유전자교정 기술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술발전의 보급에 이바지하고 이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유전자교정학회” (이하 본회라 한다.)라 하고 영문은 “Korean Association for Genome Editing(KAGE)” 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4조(사업)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1. 유전자교정 분야와 관련된 학술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
2. 학술지, 학술간행물 및 도서 발간
3. 학계,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
4.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5. 학술의 국제교류

6. 기타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의사업을 행할 수 있다

③ 제2항의 수의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법인의 이익)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의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

제2장 회 원

제6조(회원의 구성 및 자격)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
- 정회원: 유전자교정 기술에 관한 학술 연구, 교육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
- 학생회원: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전자교정 기술 및 관련 학문을 수학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한 자
- 특별회원: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,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국내외 인사, 단체, 기관 또는 산업체
- 단체회원: 본회에 입회하여 소정의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는 학교, 도서관, 연구소,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
- 명예회원: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
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제9조(회원의 자격상실)

- 본회의 탈퇴 신고가 있을 때
- 당해연도 포함 3년 회비 미납 회원
- 제명되었을 때

제10조(회원의 제명) 본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-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

제3장 임원

제11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회장 1명
- 이사 5명 이상(회장과 부회장 포함)
- 감사 2명 이하

제12조(고문)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,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학회발전에 관한 제반 사항에 자문한다.

제13조(상임이사)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.

제14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다.

④ 모든 임원은 임기종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.

제15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.

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
제16조(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7조(회장 및 이사의 직무)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
제18조(회장의 직무대행)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9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3.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5.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,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
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·날인하는 일

제4장 총 회

제20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6. 사업계획의 승인
7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1조(총회의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,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
제22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-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(총회소집의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2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5장 이 사회

제25조(이사회 의 기능)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중요한 사항

② 이사회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6조(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7조(의결제척 사유)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8조(이사회 의 소집)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29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절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

하여야 한다.

제30조(서면의결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.

제6장 재산 및 회계

제31조(재산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3.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4.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-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
제32조(재산의 관리) ① 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 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33조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
제34조(수입금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 단, 기부금모금액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.

제35조(회계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36조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37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8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9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이 법인의 설립자
2. 이 법인의 임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40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3.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

② 년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.

제41조(정관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변경사유서 1부
2. 정관개정안(신·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4.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.

제42조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,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3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
제44조(시행세칙)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5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구분	이름	주소	임기
회장	김진수	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길 78, 103-702	2년
이사	김정훈	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1 청담공원아파트 106-1001	2년
이사	장구	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인현아파트 101-705호	2년
이사	김형범	서울시 마포구 토정로18길 11, 래미안웰스트림107동 1702호	2년
이사	김상규	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서로 반석마을 6단지 아파트 603-803	2년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2016. 12. 14

발기인 김진수 (개인인감)



발기인 김정훈 (개인인감)



발기인 장 구 (개인인감)



발기인 김형범 (개인인감)



발기인 김상규 (개인인감)

